

조례심사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2-1
----------	------

발의연월일 : 2018. 8. 10(금)

발의자 : 이주웅의원의외 1인

1. 제안이유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와 관련하여 안 제22조의2 별표 25의 주석2) “주거밀집지역”을 정함에 있어, 그 기준인 10호 미만, 10호 이상을 반경 500m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인 것으로 검토되어, 반경 250m로 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안>

[별표 25]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제22조의2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주요도로변 ¹⁾	주거밀집지역 ²⁾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10호미만)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³⁾
300m 이상	200m 이상	100m 이상	500m이상

1) “주요도로변”이란,~~생략~~ 직선거리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실제 주거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본다)

※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대상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부지경계,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3) “관광지, 문화재,~~생략~~직선거리를 산정한다.

<수정안>

[별표 25]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제22조의2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u>주요도로변¹⁾</u>	<u>주거밀집지역²⁾</u> (10호 이상)	<u>주거밀집지역 외</u> (10호미만)	<u>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³⁾</u>
300m 이상	200m 이상	100m 이상	500m이상

1) “주요도로변”이란,~~생략~~ 직선거리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실제 주거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본다)

※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대상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부지경계,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3) “관광지, 문화재,~~생략~~직선거리를 산정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

※ 본칙 및 부칙 변동없음

위 원 회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중 “기본방향으로 한다.”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한다.”로 한다.</p> <p>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0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8.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p> <p>제15조제3호 중 “차목, 타목 및 과목”을 “거목, 더목 및 리목”으로 한다.</p> <p>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입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p>	<p style="text-align: center;">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중 “기본방향으로 한다.”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한다.”로 한다.</p> <p>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0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8.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p> <p>제15조제3호 중 “차목, 타목 및 과목”을 “거목, 더목 및 리목”으로 한다.</p> <p>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입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p>

<p>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2미터 이상의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p>제35조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p> <p>제36조의 제목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변경관지구안”을 “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p> <p>제37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p>	<p>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2미터 이상의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p>제35조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p> <p>제36조의 제목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변경관지구안”을 “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p> <p>제37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p>
--	--

<p>제37조제3호(중전의 제2호)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을 “옥외철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p> <p>제39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한다.</p> <p>제40조제2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p> <p>제41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수변 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한다.</p> <p>제42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수변 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한다.</p> <p>제43조를 삭제한다.</p> <p>제44조의 제목“(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를“(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안”을 “시가지경관지구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관도로”를 “경관도로”로, “미관이”를 “경관이”로 한다.</p> <p>제45조를 삭제한다.</p> <p>제46조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p>	<p>제37조제3호(중전의 제2호)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을 “옥외철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p> <p>제39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한다.</p> <p>제40조제2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p> <p>제41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수변 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한다.</p> <p>제42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수변 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한다.</p> <p>제43조를 삭제한다.</p> <p>제44조의 제목“(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를“(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안”을 “시가지경관지구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관도로”를 “경관도로”로, “미관이”를 “경관이”로 한다.</p> <p>제45조를 삭제한다.</p> <p>제46조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p>
---	---

<p>2항”으로,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를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로 한다.</p> <p>제47조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도시미관”을 “도시경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관지구안”을 “경관지구안”으로, “수없다”를 “수 없다”로 한다.</p> <p>제51조를 삭제하고, 제48조를 제51조로 하며, 같은 조의 제목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80조”로,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을 “특정용도제한지구안”으로 한다.</p> <p>제49조의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한다.</p> <p>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51조의2(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일반주거지역 : 제33조에 따른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p>	<p>2항”으로,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를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로 한다.</p> <p>제47조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도시미관”을 “도시경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관지구안”을 “경관지구안”으로, “수없다”를 “수 없다”로 한다.</p> <p>제51조를 삭제하고, 제48조를 제51조로 하며, 같은 조의 제목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80조”로,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을 “특정용도제한지구안”으로 한다.</p> <p>제49조의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한다.</p> <p>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51조의2(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일반주거지역 : 제33조에 따른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p>
---	---

<p>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p>2. 일반공업지역 : 제33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각 목 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p>2. 일반공업지역 : 제33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각 목 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17. 4. 7.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및 전기사업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은 제22조의2 및 별표 2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17. 4. 7.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및 전기사업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은 제22조의2 및 별표 2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5]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제22조의2 관련)

위 원 회 안	수 정 안																
<p>1.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요도로변¹⁾</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거밀집지역²⁾ (10호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m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m 이상</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거밀집지역 외 (10호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³⁾</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m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m이상</td> </tr> </table> <p>1) “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약칭:농어촌도로법)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에 의하여 농어촌도로로 결정·고시되어 포장완료한 2차로 이상 도로의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p> <p>2) “주거밀집지역”이란,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실제 주거하지 않</p>	주요도로변 ¹⁾	주거밀집지역 ²⁾ (10호 이상)	300m 이상	200m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10호미만)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³⁾	100m 이상	500m이상	<p>1.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요도로변¹⁾</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거밀집지역²⁾ (10호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m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m 이상</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거밀집지역 외 (10호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³⁾</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m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m이상</td> </tr> </table> <p>1) “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약칭:농어촌도로법)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에 의하여 농어촌도로로 결정·고시되어 포장완료한 2차로 이상 도로의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p> <p>2) “주거밀집지역”이란,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실제 주거하지 않</p>	주요도로변 ¹⁾	주거밀집지역 ²⁾ (10호 이상)	300m 이상	200m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10호미만)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³⁾	100m 이상	500m이상
주요도로변 ¹⁾	주거밀집지역 ²⁾ (10호 이상)																
300m 이상	200m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10호미만)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³⁾																
100m 이상	500m이상																
주요도로변 ¹⁾	주거밀집지역 ²⁾ (10호 이상)																
300m 이상	200m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10호미만)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³⁾																
100m 이상	500m이상																

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본다)

※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대상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부지경계,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3)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가 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나. 「주차장법」에 따른 공공용 노외주차장 및 공공용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도로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중

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본다)

※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대상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부지경계,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3)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가 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나. 「주차장법」에 따른 공공용 노외주차장 및 공공용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도로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중

<p>해당 도로에서 비가시권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의 주요도로변 기준 이격거리(300m) 미적용</p> <p>마. 군수가 발전시설의 집단화, 마을기업 육성·주민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해당 도로에서 비가시권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의 주요도로변 기준 이격거리(300m) 미적용</p> <p>마. 군수가 발전시설의 집단화, 마을기업 육성·주민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	---